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환 의원 대표발의)

용 인 시 의 회

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22 - 호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발 의 자 : 윤환 의원

□ 구 분 : 일부개정

□ 개정이유

○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함

○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(안 제7조)

○ 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
○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조례 제 호

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를 “뜻은 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라 함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고”를 “이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”로 한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필하고”를 “마치고”로,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제7조에 따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”로, “자에 한하여”를 “자에게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
2.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

3.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회의 대행)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, “지체없이”을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소재지 기타”를 “소재지,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사위 기타”를 “거짓, 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14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5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입 안 자
경제환경위원회	윤 환 의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 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. 2. 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”(이하 “자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·학·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예산 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.	**제2조(정의)** ---------- ---- 뜻은 다음과 ----------. 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2. ---------- ----------이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3. “대학”이라 함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과의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(교)을 말한다.	3. ----이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----------.
제3조(자금 교부대상) 시장은 주사무소(본사)와 공장이 용인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또는 첨단·벤처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.	**제3조(자금 교부대상)** ---------- 마치고 ------- 어느 하나에 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4. 그 밖에 -----------
제5조(교부신청) 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**제5조(교부신청)** ---------- 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제출서류	4. 그 밖의 ---

제6조(교부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자금의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교부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.	제6조(교부대상자의 결정) ----------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---------- ---------- ---- 자에게 ---------- ----.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연구원 2. 대학교수 3.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	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1.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.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3.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기업체 연구소장

5.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⑨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.

<신 설>	**제8조의2(위원회의 대행)**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.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3.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제9조(자금의 교부조건) 시장은 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**제9조(자금의 교부조건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---------- ----------

제11조(교부방법 및 시기) ① 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 교부한다.	**제11조(교부방법 및 시기)** ① ----------. ----- 제6조에 따라 ----------
② 대학은 제10조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3조(실적보고) ① 중소기업과 대학은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**제13조(실적보고)** ① ---------- 제12조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사업의 신고) 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**제14조(사업의 신고)** ---------- ---------- 어느 하나에 -- ---------- 지체 없이-- ----------.
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업체명,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	2. ---------- 소재지, 그 밖에 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결정의 취소) 시장은 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	**제15조(결정의 취소)** ---------- ---------- 어느 하나에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급 받았을 때	4. 거짓, 그 밖의 ---------- ----------
5.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	5. 제14조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
제16조(자금의 반환) 시장은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결정 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분에 이미 자금이 교부된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**제16조(자금의 반환)** ---------- 제15조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**제17조(시행규칙)** 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